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05

발의연월일: 2021. 4. 23.

발 의 자: 강은미・양정숙・장혜영

조오섭 • 류호정 • 배진교

용혜인 • 이은주 • 심상정

김홍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구 환경과 인류 생존은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크나큰 기후 위기에 직면해있음.

기후위기는 홍수, 가뭄, 한파, 산불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감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등의 사회재난, 일자리 감소 등의 경제 침체로 표출되고 있으며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생존마저 위협하고있음. 아울러 인종, 사회적 지위, 빈부의 간극이 더 커지고 차별 현상이 확대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음.

세계 각국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 온도를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탈탄소 국가전략을 수립해야함.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적인 대응 흐름에 앞장서서 기

후정의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인 위기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함.

이에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은 물론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인 예측과 분석, 국제적인 감축목표와 대응전략, 미래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자함. 이를 위하여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과 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과 시·도 추진계획도 수립·시행하도록 함. 또한기후위기영향평가와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고 녹색국토와 물의관리, 탈탄소 교통체계 수립, 녹색건축물 확대, 탈탄소사회를 위한 생산·소비체계 구축, 에너지전환정책과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등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와 부문별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안제1조 등).

법률 제 호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 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함께 해소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 대책 을 마련함으로써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 한 환경 및 사회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심각해져 날씨의 극단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태풍, 홍수, 한파, 가뭄, 폭염, 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감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등 사회재난,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일자리 감소, 경제침체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의미한다.
- 3.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

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 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 4.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 5. "온실가스 순배출"이란 대기 중으로 배출, 방출, 누출되는 온실가 스의 전체량에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과 토지,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흡수량을 뺀 것을 말한다.
- 6. "기후위기적응"이란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예상되는 자연적·사회적 재난 상황과 사회적 변화 등 파급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7. "기후위기대응"이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관련 협력 증진 등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 8. "탈탄소사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과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사

회를 말한다.

- 9.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 충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탈탄소사회 전환의 부담을 공정하게 나눠 분담함으로써 인권·생명권·건강권·환경권·식량주권·성평등·세대 및 지역간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10. "정의로운 전환"이란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사회나 산업의 노동자·농민·중소상공인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탈탄소사회 전환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며,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 11.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 12.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 13. "자원순환사회"이란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사회를 말한다.
- 14.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수요관리를 촉진하고, 화 석연료와 원자력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15. "친환경농어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친환경농어업을 말한다.
- 16. "식량자급률"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 3항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에 따른 자급률을 말한다.
- 17. "탈탄소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 18. "탈탄소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 이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전환을 통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 19. "탈탄소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이용을 최소화하고 에 너지전환을 통하여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함으로써 탈탄소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 20. "탈탄소생활"이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 2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후위기대응의 기본원칙)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1. 정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이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대응 흐름을 바탕으로 기후정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인 위기대응 전략으로서 탈탄소사회 실현 국가 전략을 추진한다.
 - 2.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인 예측과 분석, 국제적인 감축 목표와 대응 전략, 미래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 등을 고려하 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한다.
 - 3. 정부는 오염자 부담원칙과 기후정의 원칙에 따라 공동의 차별화 된 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 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와 금융체계를 개편하며, 기후위기의 피해와 손실에 대해 정부와 오염자가 구제 및 보상할 수 있도록 한다.
 - 4. 정부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관리, 에너지원을 바꾸기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기술적·사회적·경제적 기반을 마련한다.
 - 5.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따라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이들을 보호하고,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 평등을 동시에 극복하여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6. 정부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도시, 건물과 교통,

-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하천, 산림, 해안, 토지 등 국토를 탈탄소사회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 7. 정부는 식료품의 생산 · 유통 · 가공 · 판매과정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적극 도입하고, 이를 통하여 친환경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며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다.
- 8.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가기 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경제단체, 노동조합, 농어민단체, 중소상공인 단체, 시민단체 등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한다.
- 9. 정부는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과정에서 공공성 · 민주성 ·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공공부문이 주도 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하되, 민간부문과 조화로운 발전 ·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0. 정부는 사회·경제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 소비를 절감하여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한다.
- 11. 정부는 정책 수립에 있어 기후정의와 탈탄소사회 실현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존 추진 중인 정책이 기후정의와 탈탄소사회 실현 목표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 기 심화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각종 정책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사회 동향을 분석하여 탈탄소사회의 조속 한 실현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사회 실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국민, 민간단체에 기술적·재정적·제도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을 예측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국민에게 투명한 정보제공과 교육·홍보를 진행해야 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기후위기 피

해와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

- 제5조(사업주 및 국민의 책무) ① 사업주와 국민은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참여 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 국민은 모든 활동에 있어 기후위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탈탄소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탈탄소경영을 통하여 기업의 활동 전과정에서 온실가 스 배출을 줄이고 탈탄소기술 연구개발과 탈탄소산업 투자, 고용 확 대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④ 국민은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 기 위한 탈탄소사회 실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의 책임을 지닌 사업주는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와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할 책임을 가진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사회 실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②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사회 실현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은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 및 제7조에 따른 탈탄소사회국가전략, 감축목표, 기본계획 등과 정합성을 이루어야 한다.

제2장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 등

- 제7조(정부의 탈탄소사회 국가전략 수립·시행) 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등을 포함하는 국가전략(이하"탈탄소사회국가전략"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탈탄소사회국가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2050년 탈탄소사회 실현을 목표로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에 관한 사항
 - 2.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3.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조세ㆍ금융에 관한 사항
 - 4.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으로 감축된 온실가스의 측정·보고·검 증에 관한 사항
 - 5.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경제·산업·조세·금융·국토·교통· 건축·농림수산·식품·물관리·자원순환·탄소흡수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
 - 6.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인력양성, 교육 · 홍보 등 기후위기 대응, 탈탄소사회 실

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고려하여 탈탄소사회국가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탈탄소사회국가전략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탈탄소사회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13 조에 따른 탈탄소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그 밖에 탈탄소사회국가전략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① 정부는 2050년 이전에 국가 온실 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기술적 여건과 전망, 사회적 여건 및 국제협약·협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목표를 5년마다 재검토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목표 재검토 시 10년 단위 온실가스 배출 량 목표와 이에 따른 온실가스 누적배출량을 매년 재검토하여야 한 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목표는 「파리협정」에 따른 진전의 원

칙을 따라야 한다.

- 제9조(지방자치단체 탈탄소사회 국가전략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탄소사회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탈탄소사회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탈탄소사회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제12조에 따른 탈탄소사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① 제12조에 따른 탈탄소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탄소사회국가전략과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제12조에 따른 탈탄소사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① 제12조에 따른 탈탄소사회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평과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탈탄소사회위원회 등

- 제12조(탈탄소사회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탈탄소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 3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 ②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위원회 위원은 기후위기대응, 탈탄소사회 실현, 정의로운 전환 정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 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외의 위원은 위 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대통령과 위원장은 청소년,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 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 이들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그 밖의 상임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⑥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 한다)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제15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6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 제18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

다)의 직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사무처)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에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할 징계위원회를 둔다.
 -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 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하다.
 - 1.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사회 실현과 관련된 사항
 -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사회 실현 관련 사항

- 3. 탈탄소기술·탈탄소산업과 정의로운 전환 관련 국민과 이해당사 자의 고충조사, 처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탈탄소사회국가전략의 수립 · 변경 · 시행에 관한 사항
 - 2. 제8조에 따른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 3.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정의로운전환기본계 획에 관한 사항
 - 4. 탈탄소사회 이행 관련 목표 관리, 이행점검,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5.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 6. 제49조에 따른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 7. 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전환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 도록 한 사항

- 제2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 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회의의 시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처리 또는 이해당사자 및 관련 집단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을 둘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관계 분야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단체 또는 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6조(지방탈탄소사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사회 실현에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탈탄소사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지방탈탄소사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

- 제27조(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기후위기대응 기본원칙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순제로를 달성하고,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기후 위기대응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은 제3조에서 정한 기후위기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 2.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 3.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 단계별 대책
- 4.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 5.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6.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 7. 기후위기대응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8. 기후위기대응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9. 기후위기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 대책에 관한 사항
- 10.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기후위기대응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탈탄사회국가전략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지방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이 원활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8조 (지방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적응 대책을 마련하 기 위하여 별도의 지방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한다.
 - ② 정부는 지방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이 원활하게 수립ㆍ시행될 수

-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지방기후위기대응계획의 수립·시행 및 이행실적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공공기관기후위기대응계획의 수립·시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의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계획과적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공기관기후위기대응계획을수립·시행해야한다.
 - 1.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공공기관
 - 2. 에너지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설비·건축물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공 공기관
 - 3. 자연재난, 사회재난, 일자리감소 등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하여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
 - 4.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 ② 정부는 공공기관기후위기대응계획이 원활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공공기관기후위기대응계획의 수립·시행 및 이행실적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정부는 기후위기대응 및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하여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와 관련된 계획을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환경적 ·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제개편, 에너지 가격의

합리화, 에너지의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제고 등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며, 에너지 저소비·자원순환형경제·사회구조로 전환한다.

- 2.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을 과감하게 축소하여 단계적으로 퇴출한다.
- 3. 태양에너지,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개발·생산·이용 및 보급을 과감하고 신속히 확대한다.
- 4. 대규모·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을 소규모·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며, 에너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에너지 분권·자치를 강화한다.
- 5. 국민 모두에게 적정가격의 에너지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보장하여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6. 에너지 정책의 공공성·민주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되, 민간부문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7. 에너지 자원의 확보, 에너지의 수입 다변화, 에너지 비축 등을 통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
- 제31조(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에 너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에너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2.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3.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
- 4. 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5. 에너지산업 일자리 현황과 전망,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 6.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7.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부존에너지자원 개발 및 이용, 에너지 복지 등에 관한 사항
- ④ 에너지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탈탄사회국가전략과 제27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 제32조(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소비의 목표관리) ① 정부는 제8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주 등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소비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의 목표설정 시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소비 목표관리제의 적용대상, 목표설정 방식 및 위반 시 제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33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산림 등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작성·관리하거나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국제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문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분석·검증하여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적인 정보 및 통계 관리방법, 관리기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탈탄소사회지원센터의 설립)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

- 위기대응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전환 전환 촉진, 정의로운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탈탄소사회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탈탄소사회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지원
- 2.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 3. 에너지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 4. 정의로운전환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 5. 탈탄소사회 실현에 대한 홍보·교육 사업
- 6.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업
- ③ 탈탄소사회지원센터의 체계, 예산지원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와 부문별 시책

- 제35조(기후위기영향평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기후위기영향평가"라 한다)하며, 그 결과를 계획·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후위기영향평가의 대상 및 절차, 평가에 포함

되어어야 할 내용,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탄소인지예산제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탈탄소사회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고 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탄소인지예산 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탄소인지예산제도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의 기후위기대응 기본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 제37조(에너지전환정책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기후위기대응 및 탈 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개선 등 에너지 소비 감축에 관한 사항
 - 2.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및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 설비의 단계적 퇴출 및 관련 보조금·지원금·면세 혜택의 단계적 폐지에 관한 사항
 - 3.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 4. 에너지산업의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 5. 해외 화석연료 · 원자력 에너지 개발 및 투자의 단계적 폐지에 관

한 사항

- 6. 그 밖에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은 제30조에서 정한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 제38조(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정부는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 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생물자원과 수자원 등의 변화와 국민건 강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위기로 인한 각종 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연구, 기술개발, 관련 전문기관의 지원 및 국내외 협조체계 구 축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수자원·수질, 보건, 농·수산식품, 산림, 해양,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평가하고 그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위기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국민・사업주 등이 기후위기적응대책에

따라 활동할 경우 그에 필요한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9조(녹색국토의 관리) ①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 능한 국토(이하 "녹색국토"라 한다)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국토 종합계획·도시·군기본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제3조에 따른 기후위기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녹색국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자원순환형 자립형 탄소중립도시 조성
 - 2. 국토의 주요 생태축보전 및 생태계 복원
 - 3. 개발대상지 및 도시지역 자연자원총량의 보전
 - 4. 산림녹지 등 탄소흡수원 확충
 - 5. 탈탄소사회 실현을 고려한 사회 인프라시설의 건설과 기존 시설의 전환
 - 6. 친환경 교통체계의 확충
 - 7. 자연재해로 인한 국토의 피해 최소화 및 회복탄력성 제고
 - 8. 그 밖에 녹색국토 조성에 관한 사항
 - ③ 정부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제40조(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물 관리)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과 가뭄 등에 대비한 안정적인 수 자원의 확보
- 2. 수생태계의 보전·관리와 수질개선
- 3. 물 절약 등 수요관리, 적극적인 빗물관리 및 하수 재이용 등 물 순환 체계의 정비 및 수해의 예방
- 4. 자연친화적인 하천의 보전 · 복원
- 5. 수질오염 예방·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 제41조(탈탄소 교통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설정·관리하고, 내연기관차의 판매·운행 축소를 위한 단계별목표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에너지소비량과 탈탄소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 중교통분담률, 철도수송분담률 등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세제 지원, 연구개발, 공공기관의 구매의무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등 관련

제도의 도입 및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철도가 국가기간교통망의 근간이 되도록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버스·지하철·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며, 자전거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대도시·수도권 등에서의 교통체 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통수요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버스·지하철·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확대
- 2.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 3. 버스 · 저공해차량 전용차로 및 승용차진입제한 지역 확대
- 4.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확 대·구축
- 5. 자전거 이용 등 다양한 이동수단의 도입 방안
- 제42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하여 단계별 목표와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한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건축물의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기준 및 허가·심의를 강화하는 등 설계·건설·유지관리·해 체 등의 단계별 대책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신축되거나 개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력소비량 등에너지의 소비량을 조절·절약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기를 부착·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 ⑥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하여 그 이행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⑦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의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확대·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⑧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지원, 조세의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3조(친환경농업의 촉진 및 탄소흡수원 확충)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소비지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과 목재및 임산물의 생산·유통 및 소비를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

- ② 정부는 농지, 산림, 연안습지, 바다숲(대기의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위하여 바다 속에 조성하는 우뭇가사리 등의 해조류군을 말한다)의 보전·조성 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미이용 바이오매스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반드시 온실가 스 감축과 기후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행계획 을 반영해야 한다.
- ④ 정부는 친환경 지역먹거리 이용 및 채식·기부식품 확대 등 온 실가스 저배출을 위한 시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 제44조(탈탄소사회를 위한 생산·소비 체계) ① 정부는 재화의 생산·소비·운반 및 폐기(이하 "생산등"이라 한다)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와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에 에너지 소비량 및 탄소배출량 등이 합리적으로 연계·반영되고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공개 ·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재화의 생산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량,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 한 정보를 축적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녹색제품의 사용·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의 생산등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5조(탈탄소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정부는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녹색 생활 실천이 전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탈탄소사회 실현에 관한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탈탄소사회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한다.
 - ④ 공영방송은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야 한다.

- 제46조(국민 참여 및 협동조합 활성화) ①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사회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 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과 정의로운전환기금의 설치 · 운용 등

- 제47조(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의 기본원칙) 정부는 기후위기대응 및 탈 탄소사회 실현 과정에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하여 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 1. 기후정의 원칙에 따라 이해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초하여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 2.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손실 등이 지역사회와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에게 전가되지 않아야 한다.
 - 3.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 계층, 젠더, 산업과 노동, 세대 등에 대

한 현황 파악과 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환 과정에 대한 정보제공, 재교육, 재취업 및 전직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이해당사자 역량 증진과 생활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5.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제도·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여 관련 제도·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8조(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제47조에 따른 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 는 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후위기대응으로 영향을 받을 일자리·지역·계층에 대한 현황 과 전망
 - 2. 기후위기대응으로 영향을 받을 지역 · 계층에 대한 지원계획
 - 3. 정의로운전환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계획

- ④ 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탈탄소사회국가전략과 제 27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 제49조(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의 지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이하"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1.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루어진 지역
 - 2.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거나 어려운 지역
 - 3. 그 밖에 기후위기로 인하여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 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 ② 정부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및 제34조의 고용조정, 고용재난지역 선포 및 고용안정대책 수립
 -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및 지원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의 선포와 지원
- 5.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에 필요한 행정상·금융상·세제상의 지원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1. 특구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 2. 특구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특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 제5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 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1조(국제협력의 증진) ①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등의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 국외 진출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 ② 국가는 개발도상국가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 능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에서 발표하는 공신력 있는 기후 변화 대응 평가에 대한 국가별 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및 평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 제52조(국회 보고) ① 정부는 제7조에 따른 탈탄소사회국가전략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제27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 제3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및 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3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 본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당사국총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한다.
제3조(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관한 특례)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
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표의 이 법 시행일 이후 첫 재검토 시

한을 2022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